



주목할 만한 내용:

1. 조세관리

- 2022년 부가가치세 ("VAT"), 법인세 ("CIT"), 개인소득세 ("PIT") 및 토지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 2022년 국내 조립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SCT") 납부기한 연장

2. 법인소득세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귀국 경비, 회식 비용
- 주문 감소로 인해 교대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 비용, 초과근무수당
- 자산으로 자본금 인출

3. 외국인계약자세

- 로열티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DTA") 적용

4. 간접세

- 2022년 06월 20일부터 VAT 2% 감면 재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음
- 생산 및 사업을 위한 수입 물품에 대한 VAT 환급
- 개인과 단체간 사업 협력에 대한 세금 신고, 납부 의무
- 창고 임대는 VAT 2%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5.1 노동 및 사회 보험

- 근로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의 지역별 최저임금에 대한 신규 규정
-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 신청서류 제출 시 개인식별코드 및 주민등록번호 신고
-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타인의 서류를 사용하는 근로자
- 제08/2022/QĐ-TTg호 결정에 따라 주택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5.2 노동 & 보험 & PIT 및 출입국

- 실업보험 기여금의 차감으로 인한 Covid-19 예방을 위한 지원금은 PIT 비과세임
-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지속 수행

6. 무역 및 관세

- 용접원자재는 2022년 4월 22일부터 임시적으로 반덤핑관세 적용됨
- 산업단지, 경제구역 및 수출가공기업 (EPE)의 설립에 관한 신규 규정
- 신규 C/O - Form D의 사용 전환시간
- EPE의 모든 제조시설은 EPE에 적용되는 관세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해당 수입신고서 없이 국내수출 신고서 처리
- 수출품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
- 2022~2027년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을 위한 수출입 관세표를 발행하는 시행령 초안



조세관리 ("Tax Administration")



신규 규정

2022년 부가가치세 ("VAT"), 법인세 ("CIT"), 개인소득세 ("PIT") 및 토지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정부는 2022년 5월 28일에 2022년 VAT, CIT, PIT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제34/2022/ND-CP호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6월 8일에 본 시행령에 대한 Deloitte의 [세무뉴스](#)를 참조하십시오.

(정부의 2022년 5월 28일 제34/2022/ND-CP호 시행령)

2022년 국내 조립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SCT") 납부기한 연장

정부는 2022년 5월 21일에 2022년 국내 제조 및 조립 자동차에 대한 SCT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제32/2022/ND-CP호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적용 대상:** 국내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업
- ✓ **연장 기한:** 2022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국내 제조 또는 조립 자동차에 대한 SCT의 납부 기한은 2022년 11월 20일까지 연장된다.

(정부의 2022년 5월 21일 제32/2022/ND-CP호 시행령)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지침 문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귀국 경비, 회식 비용

베트남에서 파견기간이 만료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사로 귀국할 때 회사는 항공료, 이삿짐 운송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재무정책에 따름), 법규정에 따라 적법한 송장, 증빙서류가 충분히 갖추어지면 해당비용은 CIT상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되며 PIT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회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신입사원을 환영하거나 오래 일하는 근로자에게 감사하기 위해 회식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복리후생 비용으로 간주되며 법규정에 따라 해당연도의 실제 평균 급여 1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관련 적합한 증빙서류가 충분히 갖추어지면 CIT상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된다.

(박닌 세무국의 2022년 6월 1일 제 1717/CTBNI-TTHT호 OL)

주문 감소로 인해 교대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 비용, 초과근무수당

기업의 생산 및 사업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주문 감소로 인해 근로자에게 교대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마련하며 100% 또는 70%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 경우: 해당 비용은 기업의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이 없고 제 25/2018/TT-BTC호 시행 규칙 제3조, 2항 및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규정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CIT상 공제 불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된다.

수출가공기업 ("EPE")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근로자가 노동법상 규정한 한도내에서 초과 근무해야 한 상황입니다. 기업이 성급 노동국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비용은 법규정에 따라 충분한 증빙서류를 갖추면 CIT상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된다.

노동법상 규정된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근무수당 비용이 CIT상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Thai Nguyen 세무국의 2022년 5월 24일 제2518/CTTNG-TTHT호 OL)

자산으로 자본금 인출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출자한 후 자산으로 자본을 인출하는 경우 회사는 각 자산에 해당 VAT 세율로 VAT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한다. 회사는 규정에 따라 VAT 및 CIT를 신고 및 납부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6월 3일 제25536/CTHN-TTHT호 OL)

법인소득세 ("CIT")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로열티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DTA") 적용

외국인계약자는 베트남에서 로열티에 의한 소득을 발생하는 경우 FCWT에 CIT 10%가 적용되며 베트남과 한국 간의 이중과세 및 탈세 방지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금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되면 CIT 5%로 감소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른 면세/감면 적용 신청 절차는 제80/2021/TT-BTC호 시행규칙 제 62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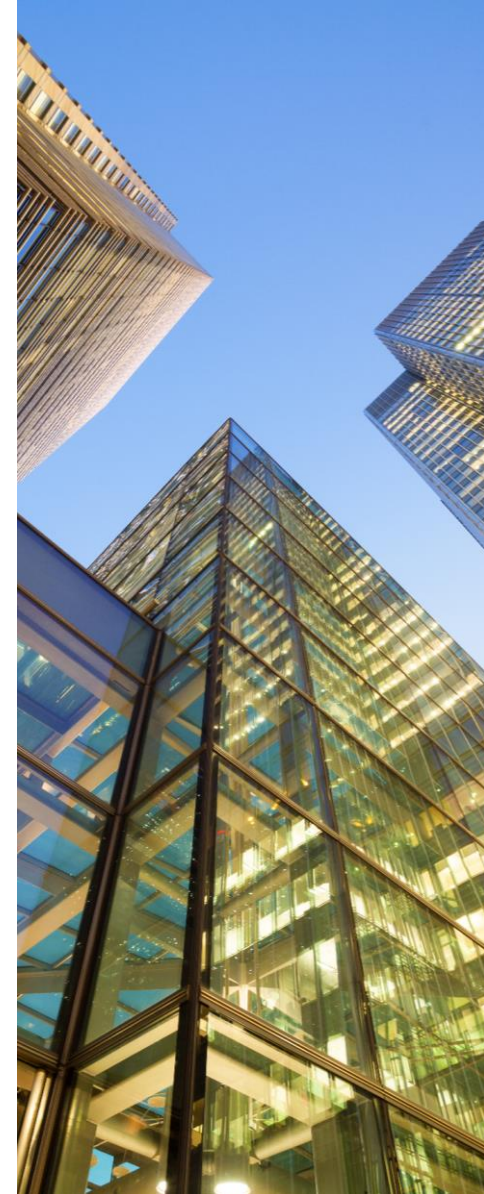
(남딘 세무국의 2022년 6월 3일 제 3512/CTNDI-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Indirect Tax")



신규 규정

2022년 06월 20일부터 VAT 2% 감면 재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음

2022년 6월 20일에 정부는 제41/2022/ND-CP호 시행령을 발표하여 VAT 2% 감면된 재화에 대한 계산서를 별도 발행하는 규정을 제거하기 위해 제15/2022/ND-CP호 시행령 제1조 4항을 수정한다. 구체적으로:

- ✓ 여러가지 세율을 적용한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VAT 계산서상 각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 세율을 기술해야 한다.
- ✓ 특히 직접 방법으로 (수입상 비율로) VAT를 계산하는 기업의 경우 VAT 감면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할 때 계산서상 감면금액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 ✓ 2022년 2월 1일부터 본 시행령이 유효된 일자 (2022년 6월 20일) 까지 기업은 감면된 세율 및 감면되지 않은 세율을 적용된 재화, 서비스를 구분 없이 같은 VAT 계산서를 발행했으면 여전히 VAT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계산서를 조정할 필요가 없고 세금 및 계산서에 대한 행정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정부의 2022년 6월 20일 제41/2022/ND-CP호 시행령)

지침 문서

생산 및 사업을 위한 수입 물품에 대한 VAT 환급

기업은 생산 및 사업을 위한 물품을 수입하고 VAT를 납부했다면 수입 단계에 초과납부 VAT세액을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다.

기업은 그이후에 사업 형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에 대하여 규정된 세금 공제/환급 조건을 충족하면 기업이 수입 단계에 지방 세무국에 납부한 VAT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총국의 2022년 5월 27일 제1815/TCT-CS호 OL)

개인과 단체간 사업 협력에 대한 세금 신고, 납부 의무

기업이 개인과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업은 아래 책임이 있다:

- 수익 분배 형태에 관계없이 조세규정 및 기업의 세금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 협력 계약의 전체 수익에 대해 VAT를 신고한다; 및
- 동시에 기업은 개인을 대신하여 PIT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세행정법 제51조 5항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협력 계약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을 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실제 사업 협력 결과에 따라 별도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

(세무총국의 2022년 5월 27일 제1805/TCT-DNL호 OL)

창고 임대는 VAT 2%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창고 임대 서비스는 제15/2020/ND-CP호 시행령 부록 I에 따라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및 토지 사용권 임대 서비스에 해당되어 VAT 2%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6월 3일 제25532/CTHN-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노동 및 사회 보험



신규 규정

근로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의 지역별 최저임금에 대한 신규 규정

2022년 7월 1일부터 제38/2022/ND-CP호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 지역 I: 월간 VND 4,680,000 (월간 VND 260,000 증가)
- 지역 II: 월간 VND 4,160,000 (월간 VND 240,000 증가)
- 지역 III: 월간 VND 3,640,000 (월간 VND 210,000 증가)
- 지역 IV: 월간 VND 3,250,000 (월간 VND 180,000 증가).

또한 시행령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지역 I: 시간당 VND 22,500
- 지역 II: 시간당 VND 20,000
- 지역 III: 시간당 VND 17,500
- 지역 IV: 시간당 VND 15,600

또한, 제38/2022/ND-CP호 시행령은 이전 제90/2019/ND-CP호 시행령에 비해 직업 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지역 최저임금보다 최소 7%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정부의 2022년 6월 12일 제38/2022/ND-CP호 시행령)

지침 문서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 신청서류 제출 시 개인식별코드 및 주민등록번호 신고

보험서류 제출 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개인식별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신고하여야 한다.

- ✓ 의료보험증의 신규 가입신청 또는 연장
- ✓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정보의 조정; 보험 가입자에게 사회보험금 정산, 사회보험장부 재발급, 사회보험 장부상 정보 조정 등
- ✓ 사회보험 보류중인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정산 신청, 사회보험 장부 재발급, 사회보험장부 정보 조정 등

(호찌민시 사회보험의 2022년 5월 20일 제2659/TB-BHXH호 통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타인의 서류를 사용하는 근로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타인의 서류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현행 노동법에 따라 정보 제공 의무 및 '정직' 원칙 위반으로 간주되어 근로계약이 완전히 무효화하게 된다. 근로계약 무효 통보 및 처리 권한은 노동법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노동보훈사회부의 2022년 5월 31일 제1767/LDTBXH-BHXH호 OL)

제08/2022/QĐ-TTg호 결정에 따라 주택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법, 협동조합법에 따라 대표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 사무소, 교육 기업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주택임대료 지원을 받을 대상에 해당된다.

14일 이상으로 출산휴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사회보험 가입자 명단에 여전히 포함되므로 주택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08/2022/QĐ-TTg호 결정에 따른 주택 임대료 지원정책은 내국인이나 외국인 근로자 구분없이 적용되어서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보훈사회부의 2022년 6월 8일 제 410/CVL-TTLD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노동 & 보험 & PIT 및 출입국

지침 문서 (cont.)

실업보험 기여금의 차감으로 인한 Covid-19 예방을 위한 지원금은 PIT 비과세임

회사가 제23/2021/QD-TTG호 결정에 따라 실업보험 기여금의 차감으로 인한 전액을 Covid-19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PIT 징수할 필요가 없다.

(2022년 5월 16일 하노이 세무국의
제/22148/CTHN-TTHT 호 OL)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지속 수행

보건부는 지방 보건국에게 입국자들에 대해 새로운 정상 시기에 입국 지원정책을 적절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 i. 입국 전 SARS-CoV-2 검사 요구사항 임시적으로 중지;
- ii. 국경 관문에서 의료 신고 요구사항 임시적으로 중지;
- iii. 국내 의료 신고 요구사항 임시적으로 중지

(2022년 6월 2일 보건부의
제/2860/BYT-DP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신규 규정

용접원자재는 2022년 4월 22일부터 임시적으로 반덤핑관세 적용됨

반덤핑관세 적용 대상인 제품은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원산인 코팅 308 스테인리스 용접봉 및 비코어 솔리드 스틸 용접 와이어가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은 다음과 같은 HS 코드에 해당된다:

7217.10.10, 7217.30.19, 7229.20.00, 7229.90.20, 7229.90.99, 8311.10.10, 8311.10.90, 8311.30.91, 8311.30.99, 8311.90.00.

반덤핑 관세율은 11.43%에서 36.11%까지 (용접봉) 및 15.30%에서 36.56%까지 (강철 용접 와이어)로 책정된다.

적용기간은 2022년 4월 22일부터 120일이다.

(산업무역부의 2022년 4월 15일 제706/QD-BCT 호 결정서)

산업단지, 경제구역 및 수출가공기업 (EPE)의 설립에 관한 신규규정

2022년 5월 28일 베트남 정부는 산업단지, 수출가공지구, 경제구역 등의 설립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제82/2018/ND-CP호 시행령을 대체하는 제35/2022/ND-CP호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단지 설립을 위한 기반 인프라의 투자 방식 및 조건;
- 경제구역의 경계선 설립, 확대 및 조정;
- 산업지구 및 경제구역에 대한 개발정책;
- 특정 유형의 산업단지 및 산업-도시-서비스 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및 정책.

EPE에 대한 주목할 만한 규정:

- 산업단지에는 EPE를 위해 지정된 구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구역은 관세당국의 감시, 감독 및 통제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 시스템과 게이트, 출입문 등으로 외부와 분리되어야 한다.

- EPE는 하기 조건을 충족하면 기타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i. 수출을 위한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제품의 보관·관리 구역이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보관·관리구역과 분리되어야 함;
 - ii. 회계장부상 수출생산가공 및 기타 사업활동의 수익 및 비용을 구분해서 기록해야 함;
 - iii. EPE에 대한 관세 인센티브를 적용된 수입 기계 및 장비는 non-EPE 활동의 생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EPE에 대한 관세 인센티브를 적용된 기계 및 장비가 다른 사업 활동에 사용될 경우, 이전에 인센티브를 적용되므로 감면된 세금은 조세법규정에 따라 재납부되어야 한다.
 - EPE는 수출생산을 위해 물품 보관공간이 부족할 경우 통관검사·감독 조건을 충족하면 산업단지나 경제구역 밖에 보관장소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EPE는 국내시장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EPE, 수출가공구역에서 국내시장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수출입관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 본 시행령은 2018년 5월 22일 제82/2018/ND-CP 호 시행령을 대체하여, 2022년 7월 15일부터 효력이 있다.
- (정부의 2022년 5월 28일 제35/2022/ND-CP 호 시행령)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신규 C/O - Form D의 사용 전환시간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의 전환기간에 발행된 C/O의 경우, 관세당국은 제19/2020/TT-BCT호 시행규칙에 따라 발행된 기존 Form 및 2022년 5월 4일 제1568/TCHQ-GSQL호 공문에 명시된 신규 Form을 다 허락한다.

2022년 11월 1일부터, 관세당국은 신규 Form에 따라 발행된 C/O- Form D만 허락한다.

상기 규정은 모두 종이 및 전자 C/O에 적용된다.

(관세총국의 2022년 5월 12일 제1683/TCHQ-GSQL호 OL)

EPE의 모든 제조시설은 EPE에 적용되는 관세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해야 함

EPE의 모든 제조시설이 규정조건을 충족해야 해당 EPE가 제18/2021/ND-CP호 시행령, 제1.10조의 관세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관세총국이 강조하였다.

또한 제18/2021/ND-CP호 시행령의 시행일 (2021년 4월 25일) 이전에 운영해 왔던 EPE의 경우 1년을 초과해도 검사·감독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을 경우 비관세구역에 대한 관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추후 지방 관세국에 의해 EPE 조건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비관세구역에 대한 관세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총국의 2022년 5월 30일 제1939/TCHQ-GSQL호 OL)

해당 수입신고서 없이 국내수출 신고서 처리

2021년 4월 25일 이전에 등록된 해당 수입신고서가 없는 국내수출의 경우:

- 관세당국은 당사자들 간의 거래가 실제로 발생했고 물품이 납품되었지만 아직 생산이나 소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경우, 기업이 해당 국내 수입신고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행정 처벌을 받을 것이다.
- 반대로 물품이 생산되거나 소비될 경우 기업이 국내수입 지연 신고를 할 수 없다. 기업의 국내수입을 관리하는 관세당국은 해당 국내수출을 관리하는 관세당국과 협조해서 위반기업에게 조세 및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2021년 4월 25일 이후에 등록된 해당 수입신고서가 없는 국내수출의 경우:

지방 관세당국은 제134/2016/ND-CP호 시행령의 제10조 & 제12조 및 2021년 6월 1일 제2687/TCHQ-TXNK호 공문에 따라 감시, 분류 및 처리한다.

(관세총국의 2022년 6월 1일 제2011/TCHQ-GSQL호 OL)

수출품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

수출품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관세총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다:

- 기업은 국제관행에 따라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상업송장을 사용해야 한다. 수출 절차를 위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규정이 없다.
- 수출품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이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한 후이다. 따라서 수출 통관 단계에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상업송장이 통관 이전 발행되고 전자 세금계산서가 그 이후 발행한다. 관세총국에서는 신고자에게 수출서류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포함하도록 안내하지 않는다.

(관세총국의 2022년 6월 3일 제2054/TCHQ-GSQL 호 OL)

신규규정 초안

2022~2027년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을 위한 수출입 관세표를 발행하는 시행령 초안

재무부는 HS 2022 및 AHTN 2022 적용에 기초하여 2022-2027년 기간에 베트남과 다른 국가/지역 간의 무역협정 및 FTA를 이행하기 위해 수출입 관세표를 발행하는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베트남 - 유럽 연합 FTA (EVFTA);
- 베트남 - 유라시아 경제 연합 FTA (VNEAEUFTA);
- 베트남-일본 경제 파트너십 협정(VJEPA);
- 아세안 - 홍콩, 중국 FTA (AHKFTA);
- 아세안 - 한국 FTA (AKFTA);
- 아세안-인도 FTA (AIFTA)
- 아세안 - 호주 - 뉴질랜드 FTA (AANZFTA)

신규 시행령은 납세자들에게 특정한 요건 및 상세한 특별우대 수출입 관세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기 신규 시행령들은 2022년 3분기에 마무리되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딜로이트가 본 시행령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고객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재부부의 베트남이 회원인 FTA를 이행하기 위해 2022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 수출입 관세표를 발행하는 시행령 초안)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